

# 투자자문준칙

제 정 2018.05.18  
전부개정 2019.06.2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인 주식회사 피델리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투자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그 임직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제4호 및 금융투자업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12조의2에 따른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 또는 그 밖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2. "금융투자상품등"이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을 말한다.
3. "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이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을 예치받거나 운용·판매(중개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자문업"이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독립투자자문업자"란 투자자문업자 중 시행령 제60조제3항제4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자문플랫폼 서비스"란 투자자 및 투자자문업자 등에게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계약 체결,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 자문내역관리, 고객관리업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7. "클린클래스"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래스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준칙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 및 정의는 법·시행령등 관련 법령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련 법령과의 관계)** 투자자문 계약의 체결 및 업무와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시행령 및 규정 등 관련 법령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진입에 관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자격요건)** 회사는 전문인력규정 제1-4조에 따른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부동산교육을 받은 자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및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장 계약의 체결

**제6조(투자자 성향 분석)** ①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려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문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별표1의 예시를 준용하거나, 투자자문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2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공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의 내용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 및 별표2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에 비추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문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①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문계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독립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
  2. 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의 수수료 수입 또는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산정방식 및 규모
  3. 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정도.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재산상 이익을 제외한다.
  4.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등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와 범위. 이 경우 자문목적 등에 따라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 및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제한 범위에 관한 사항
  5.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등의 일반적인 구조, 위험, 성격 등에 관한 사항
  6. 투자자문 제공 절차
  7. 투자자문보수 또는 수수료의 규모와 산정 기준
  8. 회사가 다른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겸영하는 금융업
  9. 임직원이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 중이거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일 경우 그 사실
  10. 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열회사인 경우 그 사실
  11. 특정한 금융회사등과 협력 또는 제휴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등의 명칭 등 그 구체적인 내용
- ②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가 계약 체결 이후에도 투자자문계약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임직원등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자료의 교부)** ①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2.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 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투자자문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8.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자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10. 그 외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필수 설명의무 사항

② 제1항의 서면자료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서면자료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할 것

**제9조(자문계약의 체결)** ①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 한다. 다만,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은 제8조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의 계약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④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약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는 해당 계약의 해제를 하는 취지의 서면, 전자문서 등을 회사로 송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4장 자문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일반원칙)** ① 회사는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확인한 투자자정보 및 별표2에 따라 분류한 투자자의 성향에 적합하도록 투자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관련시장 조사)** ① 회사는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등의 시장 전체를 조사하고 충분히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문계약에서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 금융회사등을 사전에 정하는 경우 투자자의 요청 범위 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2조(자문플랫폼 이용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별표3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플랫폼을 선택, 이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문플랫폼을 이용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자문플랫폼 서비스 제공

자의 판매방침에 구속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플랫폼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자문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① 회사는 자문에 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1. 전체적인 투자전략, 자산배분전략, 자산관리전략 등(이하 "투자전략등"이라 한다)
2. 특정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 처분,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 처분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구조, 위험, 특성 등 주요 내용
  - 나.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 처분등과 투자전략등의 관계
  - 다. 여러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 처분등에 대한 자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등 간의 관계
  - 라.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수수료, 보수 등 투자비용에 관한 사항 및 동일 유형의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비용과의 비교 결과
  - 마.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최저의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3.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투자전략등 및 특정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자적합성
4. 기타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② 회사는 특정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 처분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설명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자문보수, 수수료등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하여 그 자문의 대가는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자는

자문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투자자로부터의 자문보수, 수수료 수취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자문보수,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③ 회사는 자문보수 및 수수료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수, 수수료는 자문대상 자산규모,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등의 특성, 자문횟수, 자문제공 시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보수, 수수료는 제2항의 부과기준을 기본으로 투자자와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와의 협의하에 결정된 자문보수, 수수료가 제2항의 부과기준과 다른 경우,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자문내용등에 대한 기록·보관의무)** ① 회사는 투자자문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서면, 전산자료, 그 밖의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제8호제1항 및 제2항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의 내용이 특정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을 추천하는 내용인 경우, 추천 근거
4.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 투자자적합성의 판단 근거
5. 제14조제2항의 자문보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자문보수, 수수료 결정 근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으로부터 개별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
2.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의 판매방침 등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4.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5.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7. 투자자문에 응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8.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9.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7조(업무위탁)** 회사는 법 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투자자문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다만,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 및 해지를 위한 전자적 장치 제작 및 동 전자적 장치의 유지 보수 업무는 제외한다.
2.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다만,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자문 계약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제5장 투자자문업 경영 금융회사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자문과 집합투자업의 구분)** 투자자문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등이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에 대한 내부 업무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갖출 것
2. 투자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자문/집합투자)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

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3.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과 구분된 별도의 투자자문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확인할 것

**제19조(수수료의 구분등)**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등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에 따른 보수·수수료와 집합투자에 따른 보수·수수료를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장 기 타

**제20조(온라인 자문)** ① 회사는 온라인상으로 접속한 투자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투자자성향 분석, 제7조에 따른 설명절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온라인상으로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설명절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별표4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온라인상으로 투자자성향 분석, 계약의 체결, 설명내용의 확인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사용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투자자문 계약의 체결 및 자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 채팅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투자자의 질의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하고 회신 예정 시각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자문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 구매시 특칙)** ①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은 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절차 및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법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법 제46조, 제47조에 준하는 절차의 이행 및 관련 설명서(법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교부를 포함한다)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회사와 투자자는 증빙서류로서 별표5의 서식을 준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회사등의 판매계좌(투자자의 직접 운용지시가

가능한 형태의 계좌를 포함하며, 이하 “자문결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자문의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 표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전달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표시가 자문결합계좌를 통해 전달되기 전에 법 제46조, 제47조에 준하는 절차 및 관련 설명서(법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구매 요청한 금융투자상품등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금융회사등은 클린클래스나 온라인클래스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클래스 및 클린클래스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투자자가 자문결합계좌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등에 의한 법 제46조, 법 제47조에 따른 절차 및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교육)** 제5조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협회가 정하는 보수교육을 2년에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제23조(자문플랫폼 서비스)** 자문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법·시행령·규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플랫폼 서비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회사의 온라인 계약 지원을 위한 전자적 장치 제작 및 유지 보수
2. 투자자문과 관련된 고객 정보의 보관, 관리
3. 회사와 투자자, 금융회사 등 간 자문내역 및 이에 따른 주문·체결 내역의 전달·집행 등의 업무와 기록 보관 업무
4. 투자자문 보수, 수수료 및 성과보수 등의 징수 대행
5. 투자자문 보수, 수수료 및 성과보수 등의 계산
6.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 등 정보 제공
7. 회사의 재무설계, 성과관리 등 시스템 지원
8.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분석, 경제 리서치 관련 자료 또는 교육
9. 회사의 공시 프로세스 지원
10. 자문보고서의 생성, 발급, 교부 업무의 대행
11. 기타 투자자문업무에 부수된 사무업무 등

**제24조(공시)**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 분기별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이하 “영업보고서”라 한다)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 회사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규정 제3-70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규정 제3-70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금융회사등의 수수료 수입 또는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수취 사실 및 현황을 회사의 홈페이지(회사를 소개하는 자문플랫폼 상 홈페이지, 화면 등을 포함한다) 등에 별표4의 양식을 참고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모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한 자문)**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사모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대상 투자자를 포함하여 해당 증권 취득의 청약권유 대상 총 인원이 50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개인)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	------------------------------------	--------------------------------

정보제공에 따른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정보 제공 (계약 체결시 또는 기존정보 변경시)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	-----------------------------------

투자자정보 항목

1. 연령 (개인)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 이상 ~ 35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36세 이상 ~ 5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51세 이상 ~ 64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1. 자기자본 규모 (법인)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초과
2. 연소득 현황 (개인)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억원 초과	2. 당기순이익 (법인)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초과
3. 총 자산규모 (개인) ※ 순자산 기준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원 초과	3. 총 자산규모 (법인) ※ 순자산 기준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초과
4.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5% 이하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초과		
5. 향후 본인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6.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신용거래등
7.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8. 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9.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10. 금융지식 수준 / 이해도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11.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12.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예 정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 금융취약계층 여부 확인	본 정보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따른 적합한 계약 여부의 확인 및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손실위험 등 상품(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고령투자자(7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퇴직자 <input type="checkbox"/> 주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별표 2]

## 투자자 유형 구분 기준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별표1]의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 항목별 배점(개인)

	①	②	③	④	⑤
1번	10점	8점	6점	4점	2점
2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3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4번	10점	8점	6점	4점	2점
5번	1점	3점	5점		
6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7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8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9번	1점	3점	5점		
10번	1점	2점	3점	5점	
11번	1점	2점	3점	5점	
12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 항목별 배점(법인)

	①	②	③	④	⑤
1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2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3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4번	10점	8점	6점	4점	2점
5번	1점	3점	5점		
6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7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8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9번	1점	3점	5점		
10번	1점	2점	3점	5점	
11번	1점	2점	3점	5점	
12번	2점	4점	6점	8점	10점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2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

□ 점수 결과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류

20점 이하	안정형(초저위험)
20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추구형(저위험)
40점 초과 ~ 60점 이하	위험중립형(중위험)
60점 초과 ~ 80점 이하	적극투자형(고위험)
80점 초과	공격투자형(초고위험)

□ 투자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가능상품 분류기준(적합성 판단기준)

구분		투자가능상품 위험등급				
		초고위험 (1등급)	고위험 (2등급)	중위험 (3등급)	저위험 (4등급)	초저위험 (5등급)
투자자 성향	안정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 불가				
	공격투자형					

※ 고객이 만약 파생상품ETF(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등에 투자를 희망하고자 할 때, 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1등급)'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별표 1] 상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에 관한 부분을 고객에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채권	투기등급 포함 (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통안채, 지방채,보증채, 특수채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주식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등	그 외 주식			
ETF	파생상품ETF (레버리지인버스등)	그 외 ETF			
선물/옵션	선물/옵션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관련 추가 적합성 판단 기준

: 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1]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만 70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 만 70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70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만 70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70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70세 이상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70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li> <li>-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li> </ul>	

[별표 3]

## 독립투자자문업자의 플랫폼 활용시 준수사항

▣ 회사는 자문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자문플랫폼이 투자자문 수행을 위한 충분한 금융투자상품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자문플랫폼 이외의 방법 등과 결합하여 활용할 것

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문플랫폼을 활용할 것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상품을 제시하고 있을 것

금융투자상품등을 나열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등이 나열되고 있을 것

\* 가나다, 판매잔고, 설정액, 수익률 등

금융투자상품등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 필터링, 재정렬 가능할 것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특정 금융상품을 강조하기 위해 서체, 색상, 효과 등을 삽입하고 있지 아닐 것

광고로 비취질 수 있는 배너 등을 삽입하고 있지 아닐 것

다. 사용하고 있는 자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최선의 선택이 가능한 자문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별표 4]

## 투자자문의 온라인 계약 및 제공에 관한 특칙

- 회사는 고객과 온라인으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자문에 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온라인 자문계약의 체결]

가. 자문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자문업자를 소개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문업자가 독립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 자문서비스 제공 범위, 다른 금융회사등과의 겸영·계열관계,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그 내용 등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예시		
자문사명	(주)피델리스자산운용	비 독립투자자문업자
<주요 공시 사항>		
자문서비스 제공 범위	펀드(주식,채권,파생,ETF), 파생결합증권	
겸영업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계열 금융회사	없음	
제휴 금융회사	◇◇증권, △△증권(있는 경우)	
연락처	02-6964-8680, info@fidelisam.co.kr	
<p>※ 자문과 관련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수·수수료 등 수취 여부 :  <u>본 자문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하여, ◇◇은행, OO증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u>            ◇◇은행 : 펀드 판매액의 00%, 신탁 금액의 00%            OO증권 : ELS 판매액의 00%, 펀드 판매액의 00%</p>		

나. 온라인을 통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시
<p>▶ 투자자가 투자자정보 파악 문항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 예. Q. 2008년 금융위기시, 갑작스럽게 원금의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당신의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치에 10% 손실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p> <p>A. ① 모든 자산을 매각한다, ② 자산의 일부를 매각한다, ③ 그대로 유지한다, ④ 추가 매수를 한다</p>

다. 자문계약 체결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를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실시간채팅, SNS, 콜센터, 화상채팅 등 유·무선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
- (2) 다음 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자료, 계약서류와는 별개로 별도의 설명페이지, 팝업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
  1.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 파악 등을 통해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
  2. 투자자성향에 따라 자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3.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자문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의 수수료 수입 또는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산정방식 및 규모
  5.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온라인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되 자문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설명의무를 지나치게 형식화시키지 않는 방법

라. 투자자에게 자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시간채팅, SNS, 콜센터, 화상채팅 등 유·무선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투자자가 자문계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온라인 자문의 제공]

가. 온라인 자문 제공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를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실시간채팅, SNS, 콜센터, 화상채팅 등 유·무선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

(2) 제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자문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

(3) 기타, 온라인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되 자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설명의무를 지나치게 형식화시키지 않는 방법

나. 투자자에게 자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시간채팅, SNS, 콜센터, 화상채팅 등 유·무선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투자자가 자문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 5]

## 투자자문 확인서(금융상품 구매 요청서)

### ■ 투자자문사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사명 주식회사 피델리스자산운용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업 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자문역 성명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 ■ 고객 인적사항

<input type="checkbox"/> 고객명	<input type="checkbox"/> 자문계약체결일
<input type="checkbox"/> 구매 금융회사명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 ■ 자문 내용(자문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금융상품 종류	종목명(종목번호)	매매종류	매매금액(수량)	비고

- \* 금융상품 종류 :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RP, 주식, 채권 등 일반적 명칭 사용
- \* 종목명과 종목 번호 : 구매를 집행하는 금융회사가 식별가능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의 종목명과 종목번호 사용
- \* 매매종류 : 매수와 매도 또는 가입과 해지 등
- \* 매매금액 : 수량과 희망단가로 기재 가능
- \* 투자자문준칙 제21조에 의거 매수요청 상품이 펀드인 경우 클린클래스 또는 온 라인 전용 클래스 편입 요망

[투자자문사 확인란]

1. 주식회사 피델리스자산운용은 고객 에게 상기의 금융투자상품등의 매수를 추천 하오니, 협조 요청합니다.
2. 당사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매수 추천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46조(적합성원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등의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법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포함)를 교부하였습니다.

**[투자자 확인란]**

- ▣ 본인은 귀사에 제출한 투자자문 확인서(금융상품 구매 요청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상기 투자자문회사로부터 법 제46조에 따라 본인의 투자자성향을 확인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상기의 투자자문회사부터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 손익구조 등에 대 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상기의 투자자문회사로부터 원금손실위험,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님을 설 명 들었고, 투자결과에 따른 손실은 본인의 책임임을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으며, 동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투자상품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동 금융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_\_\_\_\_회사는 투자자가 매수를 요청하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투자권 유를 하지 않으므로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 속됩니다.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자 :       년       월       일  
 자문사 대표자명 :               서명/인  
 고객명        :               서명/인